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년 8월 14일(목) 조간
담당자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076, dkang@kdi.re.kr) 양숙영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058, sookyoung@kdi.re.kr)
배포일시	2014년 8월 13일(수)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KDI-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 일 시: 2014년 8월 13일(수) 14:00~16:1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 최: KDI · 한국노동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금융위원회

□ KDI는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13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각계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핵심 현안인 사적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정책세미나는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의 '사적연금 활성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

○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인열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14:10~14:40	발 표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14:40~15:50	패널 토론 사 회 김재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교수 토 론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인열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
15:50~16:10	종합정리 사 회 김재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교수

❖ 첨부2. 발표 요약

사적연금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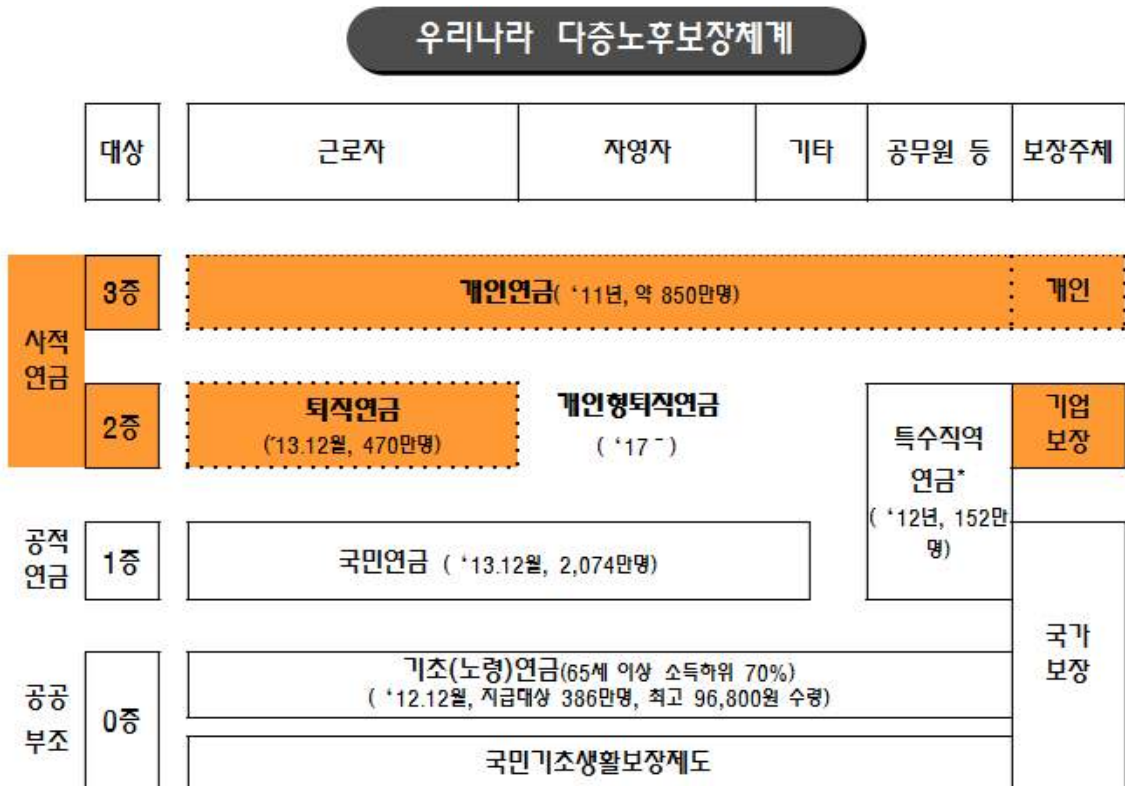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1. 논의 배경

-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
 - 65세 이상 인구 비율(통계청): 14%('18)→20%('26)→32.3%('40)
 - 노인빈곤율(OECD, 2009): 45.1%(한국), 13%(OECD 평균), 24%(미국), 22%(일본), 27%(호주)
- 특히, 은퇴 이후 소득 단절에 따른 빈곤층 전략과 연금자산 미비로 인한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
- 따라서 은퇴 이후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연금 가입 및 활용은 미흡한 실정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연금가입율 27.6% (2011, 금융연)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절실
 - 복지재정 수요의 필연적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재정고갈 예상('13년 재정 추계)

2. 사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의 사적연금 부문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으로 구성



-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한계

- ①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축적이 부족하고,
- ② 운용상 규제와 비효율이 크며,
- ③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되어 있어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주요 현황과 문제점

① 퇴직급여체계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

-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
-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은 상황
- 연금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

	'09	'10	'11	'12	'13
영세사업장	4.2%	5.7%	8.1%	12.1%	14.5%
중소기업	4.9%	6.6%	9.1%	13.3%	15.9%
대기업	35.0%	48.6%	67.8%	73.3%	91.3%
전 체	4.9%	6.6%	9.2%	13.4%	16.0%

②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된 상황에서 연금가입자의 선택권 제한

- 연금 도입 및 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금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참여가 제한
- 도입 초기 단계부터 기업 연금담당자와 연금사업자 간의 유인구조가 가입자의 이익과 배치

③ 연금적립금 운용 규제와 자산운용기법의 미비로 연금자산 축적에 높은 비효율성 존재

-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확정급여(DB)형(72.0%) 편중, 원리금보장형 위주(92.6%)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위주(81.9%)의 자산구성상 편의가 심한 상태

- 해외 주요국과 달리 확정기여(DC)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④ 연금 수급권 보장 장치 부실
- ⑤ 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관행 보편화

3. 사적연금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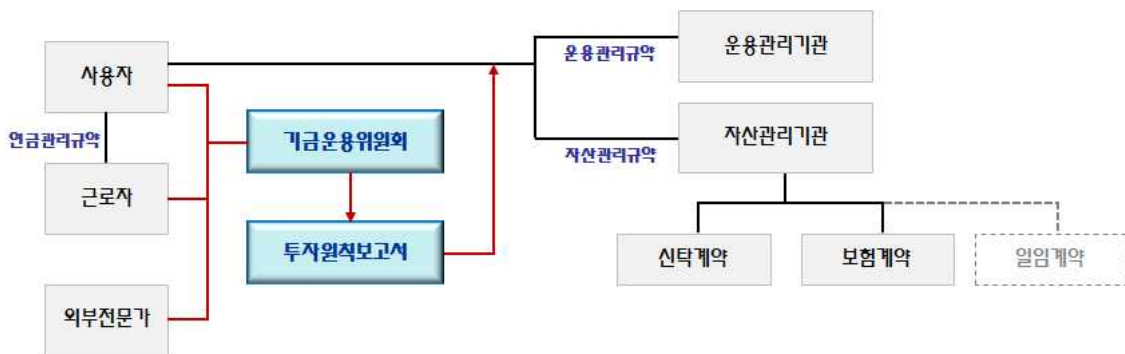
□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 (기대효과) 퇴직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률 제고

단계적 도입의무화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2016.1.1~	2018.1.1~	2020.1.1~	2024.1.1~
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계약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기대효과)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 ·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 도모



- 아울러 기존의 계약형 구조를 개선 · 보완하는 장치로 기금 운용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 도입(확정급여(DB)형), 표준형 DC 활성화(확정기여(DC)형) 등을 고려



□ 퇴직연금 자산운용상 규제의 합리화

○ (기대효과) 연금자산의 기반 확대와 수익성 제고

- 세분화된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의 단순화·완화를 통해 연금자산 운용기법 선진화, 연금시장 경쟁 강화, 나아가 자본시장 선진화 도모

* (예) DC·IRP형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도 DB형 수준과 동일하게 완화(40%→70%)

* (예) (공통) “과생상품 투자금지”, “실물자산은 펀드로만” (DC·IRP형) “지분증권은 펀드로만”

□ IRP·개인연금의 증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 마련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단위: 명, 억원, %)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합계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2012년	27,388 (97.4)	14,147 (99.7)	3,456 (2.6)	45 (0.3)	30,844 (100)	14,192 (100)
2013년	26,256 (91.6)	3,643 (99.0)	2,412 (8.4)	35 (1.0)	28,668 (100)	3,679 (100)

경과연도별 개인연금 계약유지율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균	95.5%	86.0%	80.2%	72.4%	52.4%

○ (기대효과)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및 수령방식의 연금화 유도

- 구체적으로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인,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유인책과 세제 유인 제공

* 2014년 8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일부 반영

□ 사적연금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보완

○ (기대효과) 연금가입자 보호

- 구체적 방안으로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 비율의 단계적 상향

* 계획: (~'15년말) 70% → (~'17년말) 80% → ('18년 이후) 80%이상 상향

- 확정기여(DC)형-IRP의 경우 퇴직연금 별도의 예금자 보호 한도 적용

- 기업도산 및 적립금 운용 부실에 대비한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 확대 개편 고려

* (예) 미국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 사적연금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강화

- 인프라 측면에서 사적연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범부처 차원의 연금정책 조율 기능을 상례화

-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 연금관련 교육과 상담을 돕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등을 적극 고려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장수채권 발행 방안 검토

4. 사적연금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 노후소득원 중 사적연금의 비중 확대가 필연적인 추세에서 사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연금 도입률 향상과 가입대상의 획기적 확대 기대
 - 적립금/GDP: [퇴직연금] ('09) 1.2% → ('13) 5.9%, [개인연금] ('09) 11.8% → ('13) 17.1%
-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입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연금 적립금 자산 운용의 정상화·선진화 계기 마련
 - 특히, 연금에 대한 인식과 주인의식을 높여 연금의 본원적인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되살리고,
 - 연금시장 발전을 통한 자본시장 성숙화·고도화로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 요인을 완화하는 추가 효과도 기대
- 궁극적으로는 사적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연금화를 통해 은퇴 이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생애주기적 소비 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 기대
 -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정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